

감정평가사 민법 필수 암기장(제3판) 추가자료

☞ 3판 p. 7 맨 위에 추가

■ 분묘의 수호 · 관리권 승계

변경 前 판례	2008년 전합 판결에서 장남이나 장손자를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판시
변경된 판례	이유 이제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법질서 변화에 부합하지 않음
	조리 1. 협의 (대판(전) 2023.5.11, 2018다248626). ↓ 협의 × 2. 최근친 연장자 우선 (조리에 부합) : 남녀, 적서를 불문하고 지위를 인정 ⇒ 제사주재자 결정에 있어 성별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,

☞ 3판 p. 17 색부분 변경 및 추가

■ 법인의 불법행위책임(제35조)

	제35조 제1항	제35조 제2항
조문	제35조 【법인의 불법행위능력】 ① 법인 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이 있다.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.	②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,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.
의의	법인에 대한 법정무과실 책임	법인책임 × 의결찬성 사원 등 연대책임
성립요건	1. 대표자 ① 이사, 특별대리인, 임시이사, 청산인, 직무대행자 포함 ② 등기 ×, 실질적 운영, 사실상 대표 ○ ③ 대표권 없는 이사 ×, 이사의 대리인 ×, 감사 × 2. 직무집행관련성 : 외형이론 → 주관적 목적, 법률위반 불문 ↳ 제한 : 직무관련성 없다는 점에 대해 상대방이 악의 or 중과실 → 법인책임 × ↳ 법인이 주장·증명책임○ 3. 대표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○	1. 대표자 : 좌동 2. 직무집행관련성 : × ↳ 목적범위 외이므로 3. 대표자 : 좌동
효력	1. 법인책임 ○ :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 ○ (법정무과실책임) ↳ 피해자의 과실 참작(과실상계)은 가능 2. 대표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○ 3. 법인과 대표자 부진정연대책임	1. 법인책임 × 의결찬성 사원 등 연대책임 2. 대표자는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○ 3. 부진정연대책임

☞ 3판 p. 21 색부분 변경 및 추가

☞ 3판 p. 21 다음 05 권리변동 추가

■ 권리의 취득

		내용	
원시취득	건물의 신축, 취득시효(제245조, 제246조), 선의취득(제249조), 무주물 선점(제252조), 유실물습득(제253조), 매장물발견(제254조), 침부(제256조 이하), 사람의 출생, 법인의 설립 등		
승계취득	이전적 승계	특정승계	매매, 교환, 증여 등
		포괄승계	상속, 포괄유증, 회사의 합병 등
	설정적 승계	제한물권의 설정 또는 취득이나 임대차계약 등	

☞ 3판 p. 24 다음 ■ 불공정한 법률행위(제104조) 표 아래 추가

■ 임의규정과 강행규정

법률규정	임의배제	임의배제시 효력	
임의규정	가능	당사자 의사대로 효력발생	
강행규정	불가	사법상 효력까지 무효화	효력규정
		무효화하지 않고 벌금 부과 등 단속만	단속규정

☞ 3판 p. 35 수정

■ 민법상 추인 비교

1. 무효행위의 추인		제139조	효과
①	강행법규 위반, 반사회적 법률행위, 불공정한 법률행위 등 무효	적용 ×	추인하여도 여전히 무효
②	통정허위표시로 무효, 무효의 가등기의 유용, 무효인 명의신탁 등 무효	적용 ○	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로 본다 (소급효 없다).
③	유동적 무효 : ㉠ 무권대리행위 ㉡ 무권리자 처분행위 ㉢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고 한 토지매매계약 등	적용 ×	추인이나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효력 발생
2.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(취소권의 포기)		제143조 ○	유동적 유효 → 확정적 유효(소급효 ×)

☞ 3판 p. 67 표 내용 추가

■ 분묘기지권

성질	지상권 유사의 물권(관습법상 물권)
성립	1. 타인 토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승낙을 얻어 분묘설치 • 승낙 없이 분묘설치 후, 시효취득(20년간 평온, 공연한 점유 ○ → 등기 ×) ↳ ※ 장사법(2001.1.13.) 이후 인정 × 2. 자기 토지 위에 분묘설치 후 → 토지 처분
공시	1. 분묘자체가 공시수단 → 등기 × 2. 평장, 암장 등 객관적 외형 존재 × → 인정 ×
효과	1. 사용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분묘수호와 봉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(주위의 공지 포함) ② 한계 : 기존 분묘에 새로운 분묘설치 허용 × ↳ 쌍분, 단분 × 2. 존속기간 : 분묘수호와 봉사가 계속하는 한 존속 3. 지료 : ① 약정에 의한 분묘기지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┌ 약정 有 : 약정대로(유상, 무상) → 승계인에게도 미침 └ 약정 無 : 무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② 자기 토지 위에 분묘설치 후 토지 처분 → 성립 시부터 ③ 시효취득에 의한 분묘기지권 ┌ 유상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(판례변경) └ 범위 : 청구 시부터
소멸	분묘기지권의 포기 : 의사표시로 소멸(점유이전 ×)